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291호 2013. 3. 20. (수)

##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3-183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 정선군공고 제2013-186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 9
- 정선군공고 제2013-192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처분 공시송달  
공고 ..... 1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6, FAX:560-2592)

#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3-1863호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정 선 군 수

### 1. 개정취지

군립공원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주체에게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2항)
- 나. 자연공원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1항)
- 다. 출향정선군민증 소지자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제12조의3)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생태환경과 (우편번호 233-804)
  - FAX제출 : 033-560-2056
  - 문의전화 : 033-560-2330

붙임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위탁관리 한다.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징수한다.

제12조의3 본문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출향정선군민증 소지자는 50% 감면한다(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탁관리) ① (생 략)                      ②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12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위탁관리 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p> <p>② ~ ④ (생 략)</p>	<p>제12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                      -----  <u>다만, 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징수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p> <p>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p>	<p>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u>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출향정선군민증 소지자는 50% 감면한다(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u></p>

## 관계법령 발췌

## □ 자연공원법

##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 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 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7.4>

###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자연공원의 명칭		
	공원시설의 종류		
	공원시설물의 위치		
	징수하고자 하는 사용료금액		
	징수방법		
징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자연공원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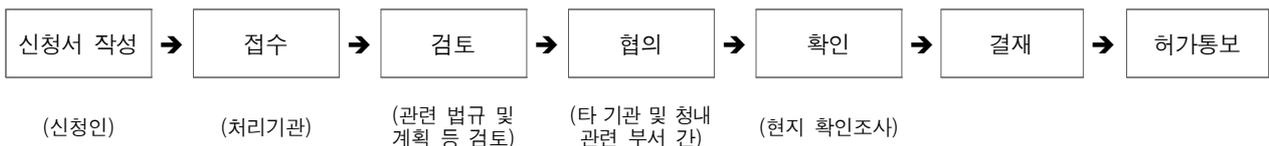
첨부서류	1.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 1부 2. 수지에산서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처리기관]

- 국립공원: 환경부
- 도립공원: 시·도
- 군립공원: 시·군·구

※ 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정선군공고 제2013-186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정선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된 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5일

정 선 군 수

1. 사 용 일

- 가. 정선군생태환경과일상경비출납원인 : 2013. 3. 15.
- 나. 정선군동계올림픽지원단일상경비출납원인 : 2013. 3. 15.

2. 폐 기 일

- 가. 정선군녹색환경과일상경비출납원인 : 2013. 3. 15.

3. 신조 및 폐기 이유 : 조직개편

4. 신조 및 폐기 공인의 인영

**신조 및 폐기공인 인영**

신조 공인명	인 영	폐기 공인명	인 영
<p>생태환경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p>녹색환경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p>동계올림픽지원단 일상경비출납원인</p>			

정선군공고 제2013-192호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이 없어 영업소 폐쇄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정 선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4. 처분 예정업소 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오리때	최시옥	강원도 정선군 남면 자못골길 14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무단휴업	영업소 폐쇄

5. 공고기간 : 2013. 3. 18. ~ 2013. 4. 1(15일간)

6. 고지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영업소 폐쇄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정선군청) 또는 재결청(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정선군보건소 위생담당 ☎ (033) 560 - 2312